

●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351호

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, 업계 및 관계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주요내용 및 사유를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4년 07월 05일

국토교통부장관

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

1. 표준번호 및 표준명

구분	표준번호	표준명	비고
개정	KS R 9111	철도 차량 용어(일반)	표준안
개정	KS R 9121	철도 선로 용어	표준안
개정	KS R 9122	가공 전차선로용 금구 — 용어	표준안
개정	KS R 9123	철도 차량용 분기기류 용어	표준안
개정	KS R 9185	철도 신호 용어	표준안

※ 표준내용은 e-나라표준인증(www.standard.go.kr)에서 확인 가능

2. 개정 사유

- KS R 9111 :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
- KS R 9121 :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
- KS R 9122 :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
- KS R 9123 :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
- KS R 9185 :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

3. 주요 개정 내용

- KS R 9111 : 국내·외 기술동향을 반영한 용어 추가 및 수정, 미사용 용어 삭제 등
- KS R 9121 : 국내·외 기술동향을 반영한 용어 추가 및 수정, 미사용 용어 삭제 등
- KS R 9122 : 국내·외 기술동향을 반영한 용어 추가 및 수정, 미사용 용어 삭제 등
- KS R 9123 : 국내·외 기술동향을 반영한 용어 추가 및 수정, 미사용 용어 삭제 등
- KS R 9185 : 국내·외 기술동향을 반영한 용어 추가 및 수정, 미사용 용어 삭제 등

4. 의견 제출

이 개정(안)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, 업체 또는 관계기관은 2024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서 기재사항

-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의견제출자의 성명 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나, 보내실 곳

- 주소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, 5동 566호
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운행안전과
- 전화 : 044-201-4604, 4608 / 팩스 : 044-201-5672